



딱 맞는  
전공을 찾으면  
생기는 일

궁극의 실력은  
인성이다

# What can't change the world ?

다양한  
탐색을 통해  
찾은 나만의  
전공 조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모집인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입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합니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차후 '모집요강'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b>I. 주요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동대학교 학생선발 방향 ..... 4</li> <li>■ 2028학년도 주요 전형 ..... 4</li> <li>■ 2028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5</li> <li>■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7</li> <li>■ 전형별 지원자격 요약 ..... 8</li> <li>■ 개설 학부 및 전공 ..... 9</li> <li>■ 학생부교과전형 평가방법 ..... 10</li> <li>■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 11</li> <li>■ 수능전형 평가방법 ..... 12</li> </ul>			
	<b>II. 수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부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G-Impact ..... 14</li> <li>2. G-Challenge ..... 15</li> </ul> </li> <li>■ 학생부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G-Impact ..... 16</li> <li>4. G-Challenge ..... 17</li> <li>5. AI·SW인재 ..... 18</li> <li>6. 글로벌·대안 ..... 19</li> <li>7. 선교사·목회자 자녀 ..... 20</li> <li>8. 사회통합 ..... 21</li> <li>9. 지역인재 ..... 23</li> <li>10. 기초생활 및 차상위 ..... 24</li> <li>11. 농어촌학생 I ..... 25</li> <li>12. 농어촌학생 II:울릉도 ..... 26</li> <li>13. 장애인 등 대상자 ..... 27</li> </ul> </li> </ul>		
		<b>III. 정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학생 ..... 29</li> <li>2. 농어촌학생 ..... 30</li> <li>3. 기초생활 및 차상위 ..... 31</li> </ul> </li> </ul>	
			<b>IV. 재외국민과 외국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국민과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외국민(3월 입학) ..... 33</li> <li>2. 전 교육과정 이수자(3월/9월 입학) ..... 35</li> <li>3. 북한이탈주민(3월 입학) ..... 37</li> </ul> </li> </ul>

# PART 1. 주요사항

---

1. 한동대학교 학생 선발 방향
2. 2028학년도 주요 전형
3. 2028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4.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5. 전형별 지원자격 요약
6. 개설학부 및 전공
7. 학생부교과전형 평가방법
8.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9. 수능전형 평가방법

# 1. 한동대학교 학생 선발 방향



구분	G-Impact 세상을 이끌 <i>Number one</i>	G-Challenge 세상을 바꿀 <i>Only one</i>
핵심 키워드	성실, 균형	도전, 탐구
선발 대상	균형형 인재	자기주도·탐구형 인재
핵심 역량	학업태도, 학업성취도, 협업, 소통, 성실, 책임	창의성, 자기주도성, 협업, 소통, 리더십
선발 프로세스	성적과 서류 위주 평가	잠재력 위주 평가

# 2. 2028학년도 주요 전형

구분	전형명	인원	지원 티켓	전형방법
학생부 교과	G-Impact(교과)	130	성실·균형 있는 인재	· 교과 100% (주요교과 상위 10개 과목) * 석차등급, 성취도, 원점수 중 우수지표 반영
	G-Challenge(교과)	70	영어 및 외국어 우수 인재	· 교과 100% (영어 및 외국어 교과 상위 5개 과목) * 석차등급, 성취도, 원점수 중 우수지표 반영 · 수능최저 영어(제2외국어/한문) 2등급 이내
학생부 종합	G-Impact(종합)	173	성실·균형 있는 인재	· 서류 100% (교과 + 비교과)
	G-Challenge(종합)	40	도전정신이 있는 인재	· 서류 50% + 면접 50%

### 3. 2028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가. 모집인원

구분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전형명	인원		전형명	인원		
수시	학생부 교과	한동인재	110	학생부 교과	G-Impact	130	
		일반	60		G-Challenge	70	
	학생부 종합	G-Impact인재	213	학생부 종합	G-Impact	173	
		-	-		G-Challenge	40	
		SW인재	7		AI·SW인재	7	
		대안학교	80		글로벌·대안	100	
		글로벌인재	65		선교사·목회자 자녀	60	
		선교사·목회자 자녀	50		사회통합	35	
		사회통합	40		지역인재	35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50	학생부 종합	기초생활및차상위	16	
	학생부 종합	기초생활및차상위	17		농어촌학생 I	16	
	학생부 교과	농어촌학생 I	16		농어촌학생 II:울릉도	5	
	학생부 종합	농어촌학생 II:울릉도	5		장애인등대상자	3	
		장애인등대상자	3		재외국민	13	
	기타	재외국민	14	기타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제한없음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정시	수능	일반학생	30	수능	일반학생	30	
		농어촌학생	0		농어촌학생	0	
		기초생활 및 차상위	0		기초생활 및 차상위	0	
합계			760명	합계			733명

#### 나.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형 신설

구분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전형명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서류형	미운영		G-Impact 사회통합 지역인재 기초생활및차상위 농어촌학생 I	서류 100%
면접형	전(全) 전형	서류 70%, 면접 30%	G-Challenge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50%, 면접 50%
			AI·SW인재 글로벌·대안 선교사·목회자 자녀 농어촌학생 II:울릉도 장애인등대상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다. 학생부교과전형 전형 방법 변경

구분	2027학년도	2028학년도
교과반영 지표	[한동인재] 석차등급 [일반] 석차등급, 성취도	[G-Impact, G-Challenge] - 원점수, 석차등급, 성취도 중 높은 점수 택 1
영어(제2외국어/한문) 반영 전형 신설	[일반]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교과 100% - 반영교과: 주요 교과 상위 10개 과목 - 수능최저: 수능최저 2합 7등급 또는 1개 1등급	[G-Challenge]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교과 100% - 반영교과: 영어(제2외국어/한문) 교과 상위 5개 과목 - 수능최저: 영어(제2외국어/한문) 2등급
우수 교과 중심 반영 전형 신설	[한동인재]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정량 70%, 정성 30% - 반영교과: 주요 교과 전 과목	[G-Impact]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교과 100% - 반영교과: 전 교과(체육, 예술, 탐구 제외) 상위 10개 과목 (사회 및 과학 융합선택과목 최대 2과목 가능, 과학탐구 실험 과목 제외, 재수생은 진로선택과목 제외)

라. 정시 반영 비율 변경

구분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정시 반영 비율	국어 35%, 수학 35%, 영어 20%, 탐구 10%	점수가 높은 영역부터 40%, 30%, 20%, 10% (국어, 수학, 영어, 탐구(통사/통과 중 택1))

마.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변경

구분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변경	1) 특성화고 졸업자	전년과 동일
	2) 국가보훈대상자	
	3) 자립지원대상자	
	4) 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5) 5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도관공무원, 환경미화원, 집배원	5) 5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도관공무원, 환경미화원, 집배원, <b>교직원</b>
	6)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	6) <b>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자녀</b>
	7) 다문화가정 자녀	전년과 동일
	8) 의사상자 및 그의 자녀	
	9) 장애인의 자녀	
	10) 조손가정의 손자녀	
	11)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의 자녀	
	12)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	지원자격 삭제 (타전형과 통합)
	13) 도서벽지 공무원의 자녀	

바. 전형 통합 및 전형명 변경

구분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전형 통합	글로벌인재(65명), 대안학교(80명)	글로벌·대안(100명)
전형명 변경	SW인재	AI·SW인재

## 4.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선발비율	수능 최저		
수시	학생부 교과	G-Impact	130	교과 100%	-	×	
		G-Challenge	70			○	
	학생부 종합	G-Impact	173	서류 100%	500%	×	
		G-Challenge	4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50%, 면접 50%			
		AI·SW인재	7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250%		
		글로벌·대안	100				
		선교사·목회자 자녀	60				
		사회통합	35				서류 100%
		지역인재	35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정원외)	16				
		농어촌학생 I (정원외)	16				
		농어촌학생 II :울릉도 (정원외)	5	250%			
		장애인등대상자 (정원외)	3				
		재외국민 (정원외)	13		350%		
		기타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정원외)	제한없음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 (정원외)	제한없음	서류 50%, 면접 50% (일괄합산)		
		정시	수능	일반학생	30		수능 100%
농어촌학생 (정원외)	0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정원외)	0						
합계		733명					

\* 수시 정원내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일반학생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수시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농어촌학생 I·II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정시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각각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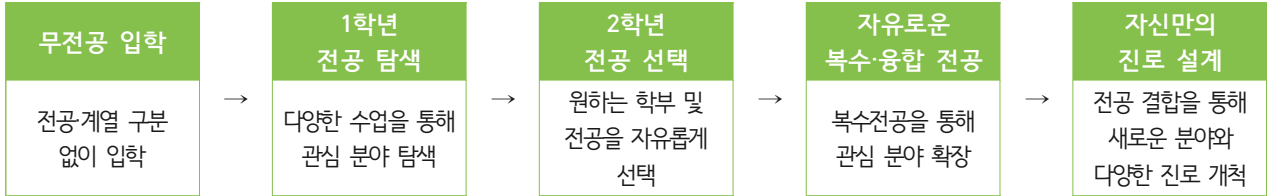
## 5. 전형별 지원자격 요약

전형명		전형별 지원 자격 주요 사항	검정 고시	고교 유형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학교	외국고
학생부 교과	G-Impact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5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있는 자	×	○	○	×	×
	G-Challenge						
학생부 종합	G-Impact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자	○	○	○	○	○
	G-Challenge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자로서 자기주도적 탐구역량과 도전정신을 갖춘자	○	○	○	○	○
	AI·SW인재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자로서 AI·SW분야에 잠재력을 갖춘자	○	○	○	○	○
	글로벌·대안	해외 초·중·고 통산 1년 이상 이수자 또는 국내 소재 외국 교육기관·외국인학교·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출신자	○	○	○	○	○
		국내 대안학교 출신자로서 2개 학기 이상의 대안학교 학생부가 있는 사람	○	×	×	대안학교만 가능	×
	선교사·목회자 자녀	국내·외 교단·교회·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선교사 또는 목회자 자녀	○	○	○	○	○
	사회통합	1) 특성화고교 졸업자	×	×	×	○	×
		2) 국가보훈대상자					
		3) 자립지원대상자					
		4) 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5) 5년 이상 근무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① 직업군인 ② 소방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교도관공무원 ⑤ 환경미화원 ⑥ 집배원 ⑦ 교직원					
		6)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	○	○	○
		7) 다문화가정 자녀					
		8) 의사상자 및 그의 자녀					
		9) 장애인의 자녀					
10) 조손가정의 손자녀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그의 자녀							
지역인재	대구·경북권 소재 정규 고등학교에서 3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	○	○	×	
기초생활및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	○	○	
농어촌학생 I	농어촌 중·고교 또는 농어촌 초·중·고 출신자	×	○	×	○	×	
농어촌학생 II :울릉도	농어촌 중·고교 또는 농어촌 초·중·고 출신자 ※ 전국 농어촌 출신자 지원 가능	×	○	×	○	×	
장애인등대상자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	○	○	○	○	○	
기타	재외국민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부모 재직/체류 조건과 자녀 재학/체류 조건을 모두 충족한자	×	○	○	○	○
	전교육과정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	×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	○	○	○
수능	일반학생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자	○	○	○	○	○
	농어촌학생	농어촌 중·고교 또는 농어촌 초·중·고 출신자	×	○	×	○	×
	기초생활및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	○	○

# 6. 개설 학부 및 전공 선택

## 가. 자유로운 학부 및 전공 선택

- 입학 후 1년간 전공을 충분히 탐색하고,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배움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나. 개설 학부 및 전공

경영경제학부	국제어문학부	법학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창의융합교육원
경영학 경제학 Global Management	국제지역학 영어	한국법 US&International Law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공연영상학	학생설계융합전공 글로벌융합전공 모듈형설계전공 글로벌한국학(한국어교육) 글로벌한국학(한국어문화) 글로벌그린노베이션학과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기계제어공학부	생명과학부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AI컴퓨터전자공학부	AI융합학부
건설공학 도시환경공학	기계공학 전자제어공학	생명과학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컴퓨터공학 AI·컴퓨터공학심화 전자공학 전자공학심화 Information Technology	Global Entrepreneurship AI융합 데이터사이언스

- Global Management전공, US & International Law전공, 글로벌융합전공, Information Technology전공은 100% 영어 강의 전공입니다.
- 글로벌융합전공과 학생설계융합전공은 학생 스스로가 설계 가능한 전공으로, 글로벌융합전공은 최소 2개의 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은 최소 3개의 전공을 융합한 전공을 설정해야 합니다. 모듈형설계전공은 모듈 교육과정 3개를 선택하여 이수하는 전공입니다.(문의 : 창의융합교육원 054-260-3306)

## 다. 전공 조합 예시

- 경영학 + 컴퓨터공학 → 디지털 비즈니스·서비스 기획,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 IT 전략 컨설턴트 등
- 상담심리학 + AI융합 → 에듀테크 콘텐츠 개발, 사용자 경험(UX) 연구, 인지과학 연구 등
- 법학 + 생명과학 → 바이오 분야 전문 변호사, 제약회사 법무팀, 특허법인, 보건·의료 정책 연구 등
- 콘텐츠융합디자인 + AI융합 → 인터랙티브 미디어, 실감형 콘텐츠 기획, AI 아티스트, 게임 기획 등
- ※ 위 내용은 전공 조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택에 따라 전공 조합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 라. 전공 선택 안내(유의사항)

- 학부(전공)을 선택 이후에도 학기 수 제한 없이 학부(전공) 변경이 가능합니다.
- 우리 대학교는 복수 전공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입생 혹은 생명과학 전공 희망 학생은 단수전공도 가능합니다.
  -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은 복합전공 내용으로 구성된 단수전공 교육과정입니다.
- 세부 전공 선택 기준 및 이수 요건은 입학 후 '수강편람'을 통해 안내됩니다.

## 7. 학생부교과전형 평가방법

### 가. 학생부교과 G-Impact

구분	내용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교과 100%
반영교과	전 교과 (체육, 예술, 교양 제외)
반영과목	반영교과의 상위 10개 과목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최대 2과목 가능, 과학탐구 실험 과목 제외, 재수생은 진로선택과목 제외)
활용지표	원점수, 석차등급, 성취도 중 높은 점수 택 1
반영학기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전 학년(이수단위 미반영)
수능최저	미적용
학교폭력 조치사항	조치사항 1~3호는 정량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기타	계열로 분류된 과목은 해당 교과로 반영하며, 그 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따름

### 나. 학생부교과 G-Challenge

구분	내용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교과 100%
반영교과	영어, 제2외국어/한문
반영과목	반영교과의 상위 5개 과목
활용지표	원점수, 석차등급, 성취도 중 높은 점수 택 1
반영학기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전 학년(이수단위 미반영)
수능최저	영어(제2외국어/한문 대체 가능) 2등급 이내
학교폭력 조치사항	조치사항 1~3호는 정량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기타	계열로 분류된 과목은 해당 교과로 반영하며, 그 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따름

## 8.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가.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학업역량, 성장역량, 공동체역량을 본교 교육이념 및 인재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영역	정의	평가항목	평가내용
학업역량	본교에서 수학하기 위한 학업능력	학업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에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탐구능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사물과 현상을 탐구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성장역량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자기주도성 (교과)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획득한 융합적 소양 및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성 (비교과)	교내활동에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지속성과 그 성장 결과
공동체역량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과 소통능력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성실과 책임감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 위 내용은 2027학년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2028학년도 내용은 추후 모집 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고사 : 면접고사 관련 내용은 추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능최저 : 없음

라. 학교폭력 조치사항 : 1단계 평가 시 조치사항 1~3호는 정량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 9. 수능전형 평가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100%

나. 반영 영역 :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반영 방법 : 점수가 높은 영역부터 40%, 30%, 20%, 10% 반영  
(탐구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중 우수한 1개 과목 반영)

라. 활용 지표 : 백분위

마. 영어 등급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점	95점	9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바. 가산점 부여 : 한국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점				9.8점	9.6점	9.4점	9.2점	9점

사. 학교폭력 조치사항 : 조치사항 1~3호는 정량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 PART 2. 수시

---

### ◆ 학생부교과

1. G-Impact
2. G-Challenge

### ◆ 학생부종합

3. G-Impact
4. G-Challenge
5. AI·SW인재
6. 글로벌·대안
7. 선교사·목회자 자녀
8. 사회통합
9. 지역인재
10. 기초생활 및 차상위
11. 농어촌학생 I
12. 농어촌학생 II:울릉도
13. 장애인 등 대상자

# 1. 학생부교과 G-Impact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30명

##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5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있는 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일반고/종합고의 특성화(전문계)/예술계/체육계/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방송통신고, 각종학교(대안학교 등),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고, 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미제공교 등은 지원할 수 없음

## 3.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교과 100%

## 5. 교과성적 반영방법

구분	내용
반영교과	전 교과 (체육, 예술, 교양 제외)
반영과목	반영교과의 상위 10개 과목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최대 2과목 가능, 과학탐구 실험 과목 제외, 재수생은 진로선택과목 제외)
활용지표	원점수, 석차등급, 성취도 중 높은 점수 택 1
반영학기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전 학년 (이수단위 미반영)
학교폭력 조치사항	조치사항 1~3호는 정량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기타	계열로 분류된 과목은 해당 교과로 반영하며, 그 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따름

## 2. 학생부교과 G-Challenge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70명

###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5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있는 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일반고/종합고의 특성화(전문계)/예술계/체육계/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방송통신고, 각종학교(대안학교 등),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고, 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미제공교 등은 지원할 수 없음

### 3. 수능최저학력기준

영어 (제2외국어/한문 대체 가능) 2등급 이내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교과 100%

### 5. 교과성적 반영방법

구분	내용
반영교과	영어, 제2외국어/한문
반영과목	반영교과의 상위 5개 과목
활용지표	원점수, 석차등급, 성취도 중 높은 점수 택 1
반영학기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전 학년 (이수단위 미반영)
학교폭력 조치사항	조치사항 1~3호는 정량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기타	계열로 분류된 과목은 해당 교과로 반영하며, 그 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따름

### 3. 학생부종합 G-Impact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73명

2.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서류 100%

5. 전형방법

- 11페이지 참조

## 4. 학생부종합 G-Challenge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40명

### 2.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과 도전정신을 갖춘 자

### 3.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500%	100%	-
2단계	100%	50%	50%

### 5. 전형방법

- 11페이지 참조

## 5. 학생부종합 AI·SW인재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7명

### 2.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AI·SW 분야에 잠재력을 갖춘 자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 5. 전형방법

- 11페이지 참조

## 6. 학생부종합 글로벌·대안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00명

### 2.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글로벌 인재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해외에서 초·중·고 통산 1년 이상 이수한 자
- ② 국내소재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예정)자

- 해외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이어야 함
- 해외학교 과정 인정기준 :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을 인정함(인터넷교육과정, 홈스쿨과정, 평생교육과정, 성인대학과정, 통신교육과정 등은 제외함)
- 해외이수기간 산정 시 월반,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이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자격①에 해당하는 자는 해외재학 기간 중 해당국가에 체류하여야 함
- 지원자격②에 해당하는 학교는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사이트 (<https://www.isi.go.kr/>)에서 확인 가능함
- 지원자격②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내 학력인정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 지원자격②의 졸업예정자는 2028.2월까지 해당학교를 졸업하여야 함

#### 2) 대안학교 출신자

아래 국내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일 기준으로 대안학교의 2개 학기 이상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한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 ②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 ③ 비인가 대안학교 : 국내 소재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함. 단, 비인가 대안학교 출신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 국내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10~12학년) 교육과정의 졸업(예정)자를 말함 (교육부 기준에 따른 국내 정규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평가에 반영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은 비인가 대안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2개 학기란 1년 2학기제에서 2개 학기를 의미하며, 1년 3학기제의 경우 총 3개 학기, 1년 4학기제의 경우에는 총 4개 학기를 의미함
- 학기 인정 범위는 정규학기를 의미하며, 계절학기, 월반,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학기 수로 인정하지 않음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 5. 전형방법

- 11페이지 참조

## 7. 학생부종합선교사·목회자 자녀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60명

### 2.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내·외 교단, 교회,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선교사 또는 목회자의 자녀

- 한국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자의 자녀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음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 5. 전형방법

- 11페이지 참조

## 8. 학생부종합 사회통합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35명

### 2.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특성화고교 졸업자 : 국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본교의 모집 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한 자
- ② 본교의 모집 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24단위 이상 이수한 자

-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추후 수시 모집요강 참조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단,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됨
  -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제외됨
  - 졸업일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하며, 졸업예정자는 2028.2월 이전 국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여야 함

2)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통해 지원자격을 심사함

3) 자립지원 대상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③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①~③까지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①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 ② 제3국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 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 5) 5년 이상 근무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① 직업군인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②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자
  - ③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자
  - ④ 교도관공무원 :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자
  - ⑤ 환경미화원 : 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근무원
  - ⑥ 집배원 :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포함) 또는 별정우체국 소속 근무원
  - ⑦ 교직원: 「초·중등교육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직원
- 6)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자녀
- 7)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 9) 장애인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의 자녀
- 10) 조손가정의 손자녀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외)조부모와 지원자(손자, 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 11)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발급 가능한 자) 또는 그의 자녀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서류 100%

### 5. 전형방법

- 11페이지 참조

## 9.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35명

### 2. 지원자격

대구·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구·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에서 3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3년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졸업일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출신자만 지원가능함(각종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지원할 수 없음)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서류 100%

### 5. 전형방법

- 11페이지 참조

## 10. 학생부종합 기초생활 및 차상위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6명

### 2.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서류 100%

### 5. 전형방법

- 11페이지 참조

# 11.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I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6명

##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지원자격 1), 2) 모두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임
- 졸업일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경우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출신자만 지원가능함(각종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지원할 수 없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영재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 주민등록상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서류 100%

## 5. 전형방법

- 11페이지 참조

## 12.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II : 울릉도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5명

###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지원자격 1), 2) 모두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임
- 졸업일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경우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출신자만 지원가능함(각종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지원할 수 없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영재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 주민등록상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 5. 전형방법

- 11페이지 참조

## 13. 학생부종합 장애인 등 대상자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3명

### 2.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 5. 전형방법

- 11페이지 참조

## PART 3. 정시

---

### ◆ 수능

1. 일반학생
2. 농어촌학생
3. 기초생활 및 차상위

# 1. 수능 일반학생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30명

\* 2028학년도 수시 정원내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일반학생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 2.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100%	100%

## 5. 전형방법

• 12페이지 참조

## 2. 수능 농어촌학생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0명

\* 2028학년도 수능 농어촌학생 I II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지원자격 1), 2) 모두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임
- 졸업일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경우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출신자만 지원가능함(각종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지원할 수 없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영재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 주민등록상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100%	100%

### 5. 전형방법

- 12페이지 참조

### 3. 수능 기초생활 및 차상위

####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0명

\* 2028학년도 수능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 2.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100%	100%

#### 5. 전형방법

- 12페이지 참조

## PART 4. 재외국민과 외국인

---

### ◆ 재외국민과 외국인

1. 재외국민 (3월 입학)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3월/9월 입학)
3. 북한이탈주민 (3월 입학)

# 1. 재외국민(3월 입학)

##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3명

## 나.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구분		내용
부모	재직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li> </ul>
	체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 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li> <li>*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li> </ul> </li> </ul>
자녀(학생)	재학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li> </ul> </li> </ul>
	체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li> <li>*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li> </ul>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 전형방법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350%	100%	-
2단계	100%	70%	30%

\* 2단계에는 서류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1단계 서류심사 점수를 반영합니다.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1단계 평가 시 조치사항 1~3호는 정량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합니다.

## 라. 제출서류

제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li> <li>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li> <li>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li> <li>4. 가족관계증명서(학생)</li> <li>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li> <li>6.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li> <li>7. 여권 사본(부모, 학생)</li> <li>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li> <li>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li> <li>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li> <li>11.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li> <li>12.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li> <li>13. 선택서류(봉사활동, 리더십활동 등)</li> </ol>

※ 위의 제출서류는 '대교협'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전 교육과정 이수자(3월/9월 입학)

###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제한 없음

### 나. 지원자격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2.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3.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참고> 국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

- 외국의 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학력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과 사이버(통신)교육과정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전형방법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제한없음	100%	-
2단계	제한없음	70%	30%

- \* 2단계에는 서류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1단계 서류심사 점수를 반영합니다.
-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1단계 평가 시 조치사항 1~3호는 정량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합니다.

## 라.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7.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8. 선택서류(봉사활동, 리더십활동 등)

- ※ 위의 제출서류는 '대교협)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북한이탈주민(3월 입학)

####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제한 없음

#### 나. 지원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다. 전형방법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일괄합산	제한 없음	50%	50%

\* 모든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1~3호는 정량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합니다.

#### 라.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5. 선택서류(봉사활동, 리더십활동 등)

※ 위의 제출서류는 '대교협)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안내 사항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 국내학교 A :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기타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비교하여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의 재학(졸업), 부모 및 학생의 체류, 국외근무자 재직/사업/영업 등 지원자격 관련 서류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함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375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입학처  
입학상담 054-260-1084~6 팩스 054-260-1809  
이메일 admissions@handong.edu  
입학홈페이지 <http://admissions.handong.edu>  
\* 자세한 사항은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2028학년도 각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